#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89

발의연월일: 2023. 2. 22.

발 의 자: 조은희 • 박정하 • 권성동

조명희 · 서일준 · 이채익

김용판 • 윤두현 • 박성민

한무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세 번째로 특별자치시·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관할 구역 안에 시·군을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고 있어, 관할 구역 안에 시·군을 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법령·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의 권한 중복 등이 문제될 수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를 특정한 경우, 생활 전반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군 또는 시장·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 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법 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8항 및 부칙 제5조제6항).

#### 법률 제 호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써 그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군 또는 시장·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의원, 강원도의 조례 및 강원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강워특별자치도지사

제27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워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8)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힞}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 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 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 ⑦ (생략) (7) (현행과 같음)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 <신 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써 그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군 또는 시장・군 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 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제5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종전의 강원도, 강원도지 사,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의 원, 강원도의 조례 및 강원도

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